

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

의안 번호	2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 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「평창군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(안 제3조)
 -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등
- 점용료 면제 대상 규정(안 제4조)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6. 08. 05. ~ 2016. 08. 25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저촉사항 없음.

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및 제3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제23조 및 제43조,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점용료의 부과징수 등) ① 점용료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,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
2.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

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점용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·전시·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준용)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평창군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부과 또는 징수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【별표】

공원 및 녹지 점용료 요율(제3조 관련)

점용대상	단위 기준	점용료 요율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, 교량, 철도, 궤도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○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, 공동구 (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)의 설치 ○ 전주, 전선, 변전소, 전기통신(군용전기 통신 설비를 제외한다)의 설치 ○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·개축·재축 또는 대수선 ○ 가설건축물(공작물) 및 이와 유사한 점용 	연액	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. ※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. (예:1,950원→1,900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		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로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도시주택과장 김 찬 수
연락처	(033) 330 - 2470

관련 법령

※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(점용료의 징수)

① 생략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